###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523

제출연월일: 2025. 5. . 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호 중 "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"을 "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"로 한다.

제3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31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	2. <u>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</u>
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	
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	
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	
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	
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・방해	
또는 기피한 자	
제33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33조(과태료)
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	
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	
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
	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
	<u>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</u>
	또는 보고를 한 자